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1 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김정재·강대식·강명구

강민국 · 강선영 · 강승규

고동진 • 곽규택 • 구자근

권성동 • 권영세 • 권영진

김 건 · 김기웅 · 김기현

김대식 · 김도읍 · 김미애

김민전 · 김상욱 · 김상훈

김석기 · 김선교 · 김성원

김소희 · 김승수 · 김예지

김용태 · 김위상 · 김은혜

김장겸 • 김재섭 • 김종양

김태호 · 김형동 · 김희정

나경원 • 박대출 • 박덕흠

박상웅 • 박성민 • 박성훈

박수민 • 박수영 • 박정하

박정훈 • 박준태 • 박충권

박형수 • 배준영 • 배현진

백종헌 · 서명옥 · 서범수

서일준 · 서지영 · 서천호

성일종 · 송석준 · 송언석

신동욱 • 신성범 • 안상훈

안철수 · 엄태영 · 우재준

유상범·유영하·유용원 윤상현·윤영석·윤재옥 윤한홍·이달희·이만희 이상휘·이성권·이종수 이인선·이종배·이종욱 이철규·이헌승·인요한 임이자·임종득·장영육 정점식·정희용·조경태 조배숙·조승환·조인의 조정훈·조지연·주진우 주호영·진종오·최보윤 추경호·한기호·한지아 의원(10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'최초 5일'에서 '휴가 전체 기간(10일)'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,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5조, 제76조, 제77조).

참고사항

이 법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00호)의 의결을 전제 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 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배우자 출산휴가"를 "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"로 한다.

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"기간 중 최초 5일"을 "기간"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"경우에"를 "경우로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 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. 다만,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.

제77조제1항 후단 중 "유산·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"를 "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76조제1항 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

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(출산전후휴가 급여 등) 고	제75조(출산전후휴가 급여 등)
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평	
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	
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피보	
험자가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	
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	
산・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	
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	
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	
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	배우자 출산휴가 또
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	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
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	<u>난임치료휴가</u>
후휴가 급여 등(이하 "출산전후	
휴가 급여등"이라 한다)을 지급	
한다.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제75조에	제76조(지급 기간 등) ①
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	
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	
「근로기준법」의 통상임금(휴	
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	
정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	
급한다.	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
2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 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<u>기간 중 최초 5일</u>. 다만,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<u>경우에</u> 한정한다.

<신 설>

②・③ (생략)

제77조(준용)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, 사실 확인,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,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2조 중 "구직급여"는 "출산전후휴가 급여등"으로, 제71조 및 제73조 중 "육아휴직"은 각각 "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"로 본다.

② (생략)

2
<u>기간</u>
<u>경우로</u>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
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
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
기간 중 최초 2일. 다만, 피보
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
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
<u>다.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77조(준용) ①
<u>ਜ</u> ੰ
산・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
또는 난임치료휴가
② (현행과 같음)